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 8 판

2022. 8. 1.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의료이용(대면, 비대면) 방법, 응급상황 시 조치사항,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생활환경 관리, 격리관리 등을 안내하고자 관련 학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하였음.
-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준용하여 제작하였음.
- 관련 법령 개정 또는 별도 공문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본 지침과 다를 수 있으며 공문 시행이 본 지침보다 이후일 경우는 공문을 따름.
- 의료기관 상담처방체계(수가 포함), 약 처방배송수령(먹는치료제 및 담양약품 포함), 관련 서식 등 사항은 관련 지침서 또는 별도 공문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제7-2판 개정	제8판 개정	개정 사유·근거
재택 치료 개요 및 사업 내용	<input type="checkbox"/> 대상군별 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분류 <input type="checkbox"/> 재택치료 의료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집중관리의료기관 등 <input type="checkbox"/>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대상군별 관리 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자 구분 폐지 <input type="checkbox"/> 재택치료 의료기관 명칭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칭 일원화 <input type="checkbox"/>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 * 원스톱진료기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재택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하고, '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p>코로나19 감염증 중 양사고수습본부 -28800(2022.7.18.) 「재택치료 체계 개편 안내」</p> <p>코로나19 감염증 중 양사고수습본부 -29390(2022.7.25.) 「재택치료 체계 개편 에 따른 지침 주요개 정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 안내」</p>
서식 (별첨)	<input type="checkbox"/> 가 1-2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서 <input type="checkbox"/> 가 1-3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 5 재택치료 건강 관리 및 감염병 치료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나 1-1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신청·변경서 <input type="checkbox"/> 나 1-2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현황 및 운영 계획서 <input type="checkbox"/> 나 1-3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참여 인력별 세부현황 <input type="checkbox"/> 나 2-1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 센터 신청·변경서 (2022.3.30.적용) <input type="checkbox"/> 나 3-2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 현황 및 운영 계획서 <input type="checkbox"/> 나 5-2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관리자 보안서약서	<input type="checkbox"/> 가 1-2 삭제 <input type="checkbox"/> 가 1-3 삭제 <input type="checkbox"/> 가 5 의료기관 명칭 변경 <input type="checkbox"/> 나 1-1 삭제 <input type="checkbox"/> 나 1-2 삭제 <input type="checkbox"/> 나 1-3 삭제 <input type="checkbox"/> 나 2-1 삭제 <input type="checkbox"/> 나 3-2 일반현황의 기관유형 수정 <input type="checkbox"/> 나 5-2 삭제	<p>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2.6.24.)</p> <p>중앙방역대책본부 -22148(2022.7.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 안내」</p>
FAQ (별첨)	<input type="checkbox"/> 재택치료의 원칙 Q1 <input type="checkbox"/> 건강관리 Q1 ~ Q8 <input type="checkbox"/>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Q1, Q3 <input type="checkbox"/>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Q1, Q2 <input type="checkbox"/> 역학적 특성 Q1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 <input type="checkbox"/>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Q1	<input type="checkbox"/> 재택치료의 원칙 Q1 삭제 <input type="checkbox"/> 건강관리 Q1, Q7, Q11 삭제, 기존 문항 내용 일부 삭제 및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Q1, Q3 수정 <input type="checkbox"/>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Q1, Q2 수정 <input type="checkbox"/> 역학적 특성 Q1 삭제 일부 문항 내용 수정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 Q4, Q5, Q7 신설 <input type="checkbox"/>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Q1 수정	

목 차

Part 1 재택치료 개요 및 사업내용

I 개요

- 1. 배경 및 목적 1
- 2. 개념 정의 1
- 3. 근거 법령 1
- 4. 재택치료 내용 2
- 5. 재택치료 관리 흐름도 3

II 대상 및 기준

- 1.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4
- 2. 생활환경 기준 5

III 재택치료 관리

- 1. 기본원칙 6
- 2. 재택치료 통지 및 안내 8
- 3.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9
- 4. 응급상황 대비 16
- 5. 관리기준 및 해제 24
- 6. 생활관리 27

IV 재택치료 지원

- 1. 재택치료비 지원 29
- 2.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29

목 차

Part 2 참고자료 및 부록

[참고]	31
1 재택치료 근거 법령	32
2 재택치료 생활수칙 안내문 (예시)	34
3-1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운영 절차 안내	41
3-2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개요	44
3-3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안내	46
4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47
5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50
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54
[부록]	55
1 재택치료 관련 안내	56
2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61
3 (의료기관 등 관련 서식)(별첨)	
4 (자주하는 질문(FAQ)(별첨)	

I
PART.

재택치료
개요 및
사업내용

1 배경 및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안내서(제4판)부터 ‘자가치료’의 시행상 용어를 “재택치료”로 명명함
-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가능하며 입원·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환자 등에 대한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개념 정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재택치료’는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함

3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 동법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동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동법 시행령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참고 1> 재택치료 근거 법령

4 재택치료 내용

< 재택치료 개요 >

코로나19 검사 (양성)	진료		증상악화 / 응급
	대면	비대면	
PCR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증상악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전화 상담·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질환 - 자율입원, 일반격리 ■ 코로나19 - 병상배정, 지정병상
		의료상담센터	응급
		전화 상담·처방(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곤란, 의식저하 - 119 구급대 이송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진료기관) ※ 검사-진료-처방 모두 가능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22.3.14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임
 - (건강관리) 스스로 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한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해 신속히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
 -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관련 자세한 사항은「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1판)」참고
- (격리관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일로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 단, 의료진이 격리해제기준에 미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 격리기간 외출 금지.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5 재택치료 관리 흐름도

- 자기입식 확진자 조사(환자) → 환자분류(보건소) → 필요시 대면비대면 진료 → 격리해제 또는 중증화 시 의료기관 이송

※ 2022.3.14(월)부터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확진으로 간주

< 코로나19 재택치료 절차 및 내용 >

절 차	내 용	담당기관
코로나19 확진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 PCR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 최초인지 보건소는 24시간 이내 보고(→시·도 환자관리반) 및 발생신고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RAT 확진의 경우 RAT 양성 신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및 진료·처방 실시하고 주의사항 안내 	보건소, 의료기관
↓		
환자 초기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서 작성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원칙 -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 파악, 입원치료 필요한 환자 선별 	확진자, 보건소 시·도 환자관리반
↓		
재택치료 대상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대상자 확정·통보 (→재택치료추진단) •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PHIS)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 및 분류 등록 	시·도 환자관리반 재택치료추진단*
↓		
재택치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 통지 문자 발송 (가구단위로 확진자에게 일괄발송) 및 재택치 료 안내문 전달(URL 문자전송), 생활수칙 안내 	재택치료추진단
↓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진료(대면, 비대면) 및 단기 입원진료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 응급이송 판단 및 요청 (→ 시·도 병상배정반) 	재택치료추진단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동네 병·의원 등
↓		
이송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가능 병원 확인 및 통보 • 구급차 등 이송수단 확보 	재택치료추진단 시·도 병상배정반 재택치료추진단
↓		
재택치료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8일차 0시)부터 격리해제 (별도 통지 없음) 	재택치료추진단

* 재택치료추진단 : 추진단이 없는 지자체는 재택치료업무 담당 부서 등이 재택추료추진단 업무 수행

1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 (대상자 분류) 보건소는 확진자에게 확진사실 통보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안내 및 초기 상담을 통해 환자 분류

(1) 재택치료 대상자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함


 병상배정 요청대상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 병상배정 요청 대상자

- 입원·입소 요인(위험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 요청하며,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보건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등)의 의견을 들을 것

◆ 생활치료센터 재가동 검토

- 확진자 급증 시 자가격리 곤란한 자 수용 및 입원병상 부담 완화 등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재가동 검토

-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중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로 분류가 가능하나, 증상이 발현될 경우 반드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24시간, 비대면)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상세히 안내할 것
- ▶ 임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2) 보호자

-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돌봄에 제한이 있는 자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호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함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 중증장애인인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2 생활환경 기준

-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자 및 동거인은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등)을 분리하여 사용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 사용 후 소독하되,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을 것

◆ 확진자가 타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화장실, 주방 확보 여부 확인

1 기본원칙

□ (재택치료자 분류) 보건소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등을 기반으로 재택 치료자를 분류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와 재택치료 예정지 관할보건소가 다른 경우, 보건소 간 필요 정보공유 및 관리 절차 협의

◆ 코로나19 대면진료 인프라 및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에 따라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22.8.1 검체 채취자부터)

□ (건강 관리) 스스로 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한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을 통해 대면·비대면 진료를 신속히 받고, 필요 시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

○ 야간 상담처방 필요 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이용

※ 시도, 시군구 자체는 <서식 나3-2>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시스템 신고

* (원칙)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인력)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의학적 자문을 위해 의사 1인 상시 배치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목적)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①호흡기전담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②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③외래진료센터, ④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 (기준) ▲(시설)별도 시간·공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한 기관, 감염관리 장비 구비 및 소독·환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 환경을 갖춘 기관으로서 ▲(인력)의사 1명·간호인력 1명이상 상근하여야 하고 진료보조 등 행정인력 1명 이상 갖추어야 함

- (지정) ①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접수 → ②관할 보건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접수된 의료기관별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정하여 지정

- (역할) 호흡기환자(비코로나) 진료,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비대면 진료 모두 가능

* “원스톱진료기관”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위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의미

- (위치)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 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개요) 재택치료자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24시간 운영**
- * 광역자치체 주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거점전담병원 또는 시도 공공병원 등 지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원칙

- (인력)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하며, 의학적 자문을 위해 의사 1인* 상시 배치하고, 소아·청소년 확진자 의료상담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상시진료체계** 구축

* 원내 인력 활용, 겸임 가능, 야간 자택 전화 대기(On-Call) 가능

**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능) 재택치료자 대상 의료상담 및 처방(먹는 치료제 등), 야간·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에 연락(비상연락체계 구축), 병상 배정 요청 접수 시 대응 등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개요) 재택치료자의 처리 절차 등 행정지원 문의 대응 위해 지자체 자치행정 또는 재난안전 부서에 설치(보건소 제외)
- (운영시간) 자율 설정 * 필요시 24시간 운영
- (기능)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문의 대응. 의료상담은 하지 않으나, 비상 상황 대응 위한 의료기관·응급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신규 개설 및 기 구축된 재택치료추진단 재정비하여 개설 가능

□ (격리관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후 별도 통보 없이 격리해제 가능

-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추적 등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2 재택치료 통지 및 안내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확진자 ‘양성통보’ 시 및 ‘격리통지’ 시, 확진자·동거인 안내문(링크), 비상연락망, 의료기관·행정안내센터 이용 등 안내(문자 발송)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안내문자 발송’* 등 재택치료 안내
 - * 일반, 소아, 임신부 등 대상자별 안내 문자 발송
-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비대면 진료 또는 의료상담센터(24시간)** 등의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하도록 안내
 - ☞ <부록 1> 재택치료 관련 안내, <부록 2>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안내
 - * 보건소(재택치료추진단),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 시도 119 등

격리통지

- **격리통지**는 신속한 통지를 위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시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
- 입원·격리통지서는 **격리자 요청 시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사후 발급 가능**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참조>
- '22.4.11. 이후 통지된 자가격리자의 **입원·격리통지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PCR 검사자 진료 안내

- **선별진료소의 PCR검사 후** 조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유증상에 대한 **대면진료 및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안내**
 - ① 지자체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 후 귀가 시**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 제공** ② **확진 통보(문자) 시 추가 안내**

3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 ◆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격리기간 동안 건강관리
- ◆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중앙방역대책본부 21777('22.7.12))

□ (진료) 신속한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한 증상 조기 치료

- 발열 등 증상 발생시, ①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 비대면), ②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4시간, 비대면)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특히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대면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절차) ①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접수→ ② 관할 보건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접수된 의료기관별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정하여 지정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운영 등의 자세한 사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1판)」 참고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대면·비대면 진료가능
- (대면진료) 대면진료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함을 안내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
 - (예약·접수) 감염 예방을 위해 동선 분리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시간* 내에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 권고
 - * 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
 - ** 필요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예약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접수 및 이동방법 안내

- (이동)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고, 필요시 지자체별 이송체계*를 활용하여 자택⇄의료기관으로 이송

*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이용 시(비응급 상황 시) 이송수단, 준수사항 〉

이송수단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 · 개인차량 ·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지자체 관리 이송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는 접종완료한 방역택시 기사 또는 동거인 (운전시 창문개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동시에는 본인 운전 허용▶ · 구급차 이송 시와 동일한 동선 활용 권장 · 백신접종자 운전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야 함
<p>▶재택치료자 호흡기진료센터 이용을 위한 개인차량 본인 운전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하고자 하는 호흡기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 재택치료자 본인 운전은 비응급상황에 호흡기진료센터 이용을 위해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 등 차량 동승이 불가피한 경우, 창문을 열고 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앉아서 이동하고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3)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하차 후 차내·외 표면 소독 4) 타인과 접촉이 없도록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외래진료센터 (주차장 포함)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p>※ 관련근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이용을 위한 개인차량 활용 안내’ (중수본-3855, 2022.1.25)</p>	

- (비대면 진료)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상담(환자→의사)

〈 비대면진료 세부 절차 〉

-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
 -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 코로나19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
 -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문자, 구두 등으로 확인
- ◆ 유의사항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
 -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Call-back)
-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필요시 처방, 이상징후 발견 시 **대면진료 권유**
 -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모든 동네 약국(먹는 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 담당약국)에 **처방전 전송**

- (기타) 확진자 상황에 따른 입원조치 및 응급상황 대응
 - **증상 발생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도록 사전 안내 강화**
 - * 지속적인 발열·기침·인후통·숨가쁨(호흡곤란) 등의 증상 등
 -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하에 의료기관 전원 실시**
 - * 환자 초기 분류 시 입원사유가 없었으나, 대상자 등록·진료 과정에서 입원사유 발견, 증상 악화 경우 등
 - 특이사항 발생 및 **야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 * 보건소(재택치료추진단),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 시도119 등



재택치료자 심리지원

- 재택치료 안내 문자를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에서 심리상담이 가능함을 안내

- (의약품 수령)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 비대면 진료시 대리인 수령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하거나 전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
 - ‘의약품 수령’도 현재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 목적의 외출로 허용
 - * 의약품을 수령하는 확진자, 공동격리인 등은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대면 진료 후 수령) 대면 진료 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 제출* 원칙(필요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 *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
 - 약국은 「코로나19 관련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의약품을 전달하며, 서면·구두 복약지도 모두 실시(비대면 유선 가능)
 - ※ (관련근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안내(중수본-17139, 2022.04.06.)
- (비대면 진료 후 수령) 동거인,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해당 약국에서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
 -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하거나,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
 - 필요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모든 동네 약국**(먹는 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 담당약국*)에 처방전** 전송 가능(이후 원본 제출 불필요)
 -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심평정보통에서 확인 가능
 -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
 - 예외적으로 1인 가구, 가족 모두 확진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별 계획에 따른 전달방식도 가능
 - ※ (관련근거)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절차 안내(중수본-12623 2022.3.16.)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 세부사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Ⅳ. 고위험군 관리방안 참고

- **(정의)**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 진행

- 병·의원 의사 판단 및 환자 동의에 따라 신속하게 입원과 연계

-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고위험군으로 인정되는 자

- (고위험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① 60세 이상 고연령층, ② 면역저하자*, ③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④ 기저질환자, ⑤ 정신병원·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

* (면역저하자) 암환자, 면역결핍증(HIV 감염 등) 환자 및 면역억제제 치료 환자, 장기이식자, 그 외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사망 등 위험이 높은 자

- **(절차)** 기존 진단검사, 처방, 입원 연계 체계를 준용

- (사전준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 시·도119 등 비상연락망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역 거점전단병원 및 일반격리병상 현황 공유

- (고위험군 인정) 확진자가 60세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인정

* ① 진단검사 통한 양성판정 직후 또는 ② 재택치료 도중 발열 등 증상 발현·악화 시 대면·비대면진료 통하여 고위험군에 포함

- **(고위험군 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통해 대면·비대면 진료 실시

- 대면진료 기능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 시 먹는 치료제 처방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 비대면 진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수행

*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의 경우 확진 초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적 고려 권고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참고)

- **(신속 입원연계)** 증상발현·악화 시 재택치료 입원절차에 준하여 즉시 사전 확보된 의료기관으로 입원 의뢰 및 이송 조치

◆ 재택치료 대상자 시스템 활용방안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시스템 입력 관련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을 일부 해소하고자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였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보건소 (역학조사팀)	시도 (환자분류/병상배정반)	보건소 (환자관리/재택관리팀)	치료기관 (입원/생치/재택관리)
확진자조사 정보	병상배정(치료기관) 정보	격리 및 격리해제 정보	건강모니터링 정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입원 병원 :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 진료지원시스템(보건의료정보원)

* 각 지자체는 모든 신규 확진자 배정정보(치료기관)를 HIRA에 입력할 필요 없이, 아래 환자에 대해서만 HIRA에 입력하시기 바람(그 외 환자는 중복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PHIS허브시스템에만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환자분류 결과 '의료기관 입원병상'으로 배정된 환자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환자 ▶격리해제 후 '격리해제 부적정' 판정 등으로 '재격리'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과거 미입력분 소급입력 필요
타 정보시스템이 입력되지 않아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하여 파악이 어려운 환자의 정보에 한하여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에 입력토록 정보 입력대상 범위 축소	

-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 확진자 조사서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간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상호연계에 활용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 업무처리 절차 및 사용대상 정보시스템 〉



- (재택치료추진단) 재택치료자 분류에 활용

- (활용방식) 확진자 기본정보 및 기초역학조사정보 등 생성(질병청 시스템) → 다른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병상배정·환자상태 등 추가 필요 정보만 입력(각 시스템) → DB 통합관리(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

☎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 고객상담센터 ☎ 1566-3232 → 5 → 1

• (DUR 시스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 정보 확인에 활용

- (조회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

- (조회 기간) : '검체채취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7일간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진단일' 및 '검체채취일' 정보가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과 환자정보 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DUR 알리미에 표출됨

• (생활치료센터) 향후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 입소자 대상 건강모니터링을 중수본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활용

- (건강정보)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앱 설치 및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하고, 환자(보호자)는 활력징후 자가측정* 결과와 임상증상** 입력 → 의료인은 측정 결과를 확인하여 건강상태 모니터링

*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손실, 미각손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구토, 설사,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기타

☎ <참고 3>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운영 절차 안내

4 응급상황 대비

◆ 기본 원칙 및 주의사항

- 재택치료 중 증상 발현 또는 악화 시 기본적인 의료상담은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동네병의원)의 대면·비대면 진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 119로 신고되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119구급대 출동 지령 등 대응
 - 코로나19 관련한 일반적 의료적 상담은 원칙적으로 지자체별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서 대응. 단, 응급여부 관계없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들어오는 요청은 가능한 119가 상담 및 대응하고 부득이한 경우 3자 통화 등을 활용 의료상담센터로 연결
 - *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으로 인한 사망 최소화를 위해 비응급 유증상 환자를 '비응급상황'으로 안내하여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위급한 환자는 골든타임 내 응급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소아, 고령자, 장애인 등)인 경우,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보호자(동거인)에게 함께 안내
 -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감염병 총괄부서, 재택치료 병상배정·응급의료 담당부서 모두 포함), 지역 내 응급 의료기관, 시도 119**를 반드시 포함하여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상황 시 대응원칙을 수립
 - * (관련근거) '재택치료자 및 의심환자 응급 상황 시 대응원칙 안내(응급의료과-1164, 2022.3.4.)
- ※ 시도 응급대응협의체(시도,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 주요 역할(응급의료과-3492, 2022.7.26.)

 - ▶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 상호 소통 및 응급환자 이송-진료-입원 연계 대응
 - ▶ 지역별 확진자 이송 기준 및 이송병원 선정 기준안 마련(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 수용병원 사전 선정)
 - ▶ 환자 이송, 응급실 환자 수용 등 모니터링 및 점검(부적정·미협조 사례 검토 및 보완)
- 재택치료추진단, 시도 119, 시도 병상배정반, **이송의료기관 간 24시간 동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 및 운영**
 - * 재택치료 과정에서 특이사항 발생 시 병상 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핫라인(비상연락망) 구축
 - 지자체별 또는 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함
 - * 기존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응급실 등 우선 활용 지정
 - * 야간에 이송할 의료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함

□ (대응체계 마련) 재택치료 대상자 규모, 기존 이송체계, 구급차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세부계획 수립

- (응급대응 협의체) 지자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시도 119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응급상황 시 대응원칙 수립

* 감염병 총괄부서, 재택치료(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병상배정·응급의료 담당부서 모두 포함

- (비상연락체계)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하도록 보건소(재택치료추진단),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 시도119 등 비상연락망(핫라인) 구축·운영

※ 지자체 재택치료추진단, 의료상담센터 모두 24시간 유선 대기 필수

- (의료기관 지정) 지자체 상황수요를 고려하여 재택치료자 상태*에 따라 이송 가능한 복수의 의료기관 사전 지정·확보

구분	재택치료자 상태	담당	역할
현장이송 (집 → 응급실)	응급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로 신고된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상담 실시 (비응급 경증은 의료상담센터 안내) ◆ 119가 직접 이송 의료기관 선정 ※ 중증인 경우 시도 응급의료대응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한 의료기관 선정 ◆ 응급상황시에는 이송 의료기관 선정 전이라도 긴급 출동하고, 전담구급대 여부와 관계없이 근거리 구급대 우선 출동 조치
	비응급이나 입원 필요	방역택시 지자체 자체 구급차 자차	의료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외래대면 진료 등 안내, 응급 상황 판단 시 119 요청) 이송 필요 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확보
	비응급이고 입원 불필요	도보/자차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 실시 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도보 또는 자차로 스스로 이동
병원 간 전원	중증	SMICU 감염병 특수 구급차	감염병 특수 구급차를 통한 권역 내 병원간 전원 지원
	경증	민간 구급차	

* 병원 연계를 기다릴 수 없는 응급인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지정 권장

- (이송수단 확보) 보건소, 의료기관, 민간 구급차, 119구급대 활용 등으로 충분한 구급차 확보 및 다양한 수단 활용(개인차량 가능)

※ 119는 중증응급질환 주요증상* 한하여 이송 요청

【중증응급질환 주요 증상】

- ▶ 쇼크(shock) 증상을 동반한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환자
- ▶ 의식 변화 환자(GCS < 8)
- ▶ 대기 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인 급성 호흡곤란 환자
- ▶ 경련 지속 중인 환자
- ▶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확인으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
- ▶ 증상 발현 이후 3시간 이내인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
- ▶ 중독 환자 중 치명적인 음독 물질과 양이 확인된 환자
- ▶ 그 외 구급지도의사와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협의하여 중증응급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 지자체별 이송계획에 따라 이송비용 확보 필요

□ (증상 발현·악화) 환자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락하여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사전 안내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24시간)

- (절차) 문진 등 진료*를 통해 입원 필요시 해당 의료기관 자율 입원 또는 재택치료추진단 및 시·도 배정반을 통한 병상 배정 요청

* 진료 후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입원 또는 병상배정 요청

※ [참고] 병상 배정 원칙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참고

○ 진료한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와 그에 따른 치료병상을 분류하며, 코로나19 증상 치료가 주요한 입원요인일 경우에 지정격리병상*에 배정함(보건소→시·도배정반)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중환자용) 등

- 기저질환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 일반격리병상 입원이 원칙(자율입원)

- 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와 병원장 협의하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잔류하여 치료 가능

* (지정격리병상)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격리병상기준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여 의료진 진료 시행

* (일반격리병상)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확진환자 자율입원을 통해 일반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 독립적인 병동단위 운영 가능

▶ (공조시설) 외기(30%)와 내기(70%) 혼합 순환방식에서 외기 100%로 급기하는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

- (배정원칙) 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등 진료를 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자율입원 및 배정 절차 개시

〈 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 〉

- ◆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경우
 - (고농도 에어로졸 상황) 기도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 ◆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 ◆ 코로나19 악화인자*를 지니고, 단기간 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소견서나 의뢰서 필수)
 - * 복잡한 기저질환, 호흡기 기저질환, 복합만성질환(당뇨·고혈압), 만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의료기관 입원 기준 미충족 사례

- 발열, 인후통 등 단순 상기도 감염 증상의 호소
- 기저질환(당뇨, 심장·폐·신장 질환, 암 등) 존재만으로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 증상이 악화 경과를 보이더라도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단순 대면진료 필요성으로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 언어소통 불가, 거주지 불명확, 휴대폰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내 관리가 곤란하여 의뢰하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된 경우

- 이송 필요 여부는 재택치료추진단(의사) 또는 대면·비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며,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 마련 이송수단(구급차, 방역택시 등) 또는 개인차량 등을 활용
- 환자가 이송되는 의료기관/시설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전달

□ (응급상황)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보호자 또는 의료진이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119구급대에 응급이송 요청

- 이송 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유지
- **응급의 경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출발시 인근 병원에 사전 연락)
- * 119 구급대의 응급진료 필요성 판단 및 지역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지도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 **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및 모바일 ‘내 손안에 응급실’ 시스템(소방청에 접속 URL 공문기(既)안내) 등을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활용 가능

소아환자의 위험 증상

-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 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
-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벌렁임(nasal flaring))가 있을 때
- 무호흡 또는 청색증
- 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 수유 곤란, 탈수
- * 연령별 정상 호흡 수

연령	0~<3개월	3~<12개월	1~4세	5~12세	>12세
호흡수/분	30~60	25~50	20~40	20~30	12~16

- 3개월 미만 소아의 발열(동반 세균감염(균혈증 등) 가능성 고려)
- 정상 산소 포화도(95%)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성인 응급상황 관련 증상: 호흡곤란, 가슴압박감, 의식저하, 혼돈, 청색증 등

- 호흡곤란, 가슴압박감, 의식저하, 혼돈, 청색증 등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응급이송) 사전에 지정된 이송 의료기관 및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응급시 병상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송

- 대상자병원 정보 실시간 공유(재택치료추진단, 시도 119, 의료기관, 시도 배정반 등), 핫라인을 구축하여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 후 이송 및 현장조치

□ (이송 의료기관)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시 일반병실 등에서 진료 가능

- 전담병상이 아닌 경우*, 입원요인이 있고 병상배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율 입원 가능

* 지자체는 지정 해제되는 중등증 병상 등 일반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 명단을 참고하여 지역 동네 병의원 등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

- 지정 해제되어 자율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재

† 심평정보통 바로가기 - [코로나 환자가 입원가능한 격리병상 보유(자율입원) 의료기관 현황 안내]

<재택치료자 증상 발현·악화시 대응 절차별 내용>

재택치료 대상자
(보호자, 동거인)

-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비대면·대면 진료 요청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야간) 등



의료기관/
재택치료추진단

- 문진 등 진료를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의 중증도를 판단하여 입원 필요성 및 지정격리병상 배정 필요성 결정

- 의료기관은 병상 배정 및 이송 필요시

- (자율 입원) 자체 보유 일반격리병상 활용 또는 전원 의뢰

- (병상 배정 요청) 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을 통해 시도 배정반에 요청

↓(자율 입원)

↓(병상 배정 요청)

의료기관
(대면진료)

- 진료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자체 보유한 일반격리병상에 자율입원*

* 일반의료체계 입원 절차에 따라 일반 격리병상 입원

- 해당병원에 입원이 어려울 경우 진료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원의뢰

시·도
배정반

- 배정 가능한 병상 확인 및 이송 의료기관 지정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 수용 요청 후 구급차 이송 요청

- 병상배정후 재택치료추진단에 배정병상 알림



재택치료
추진단

- 보건소 또는 시도 119 등에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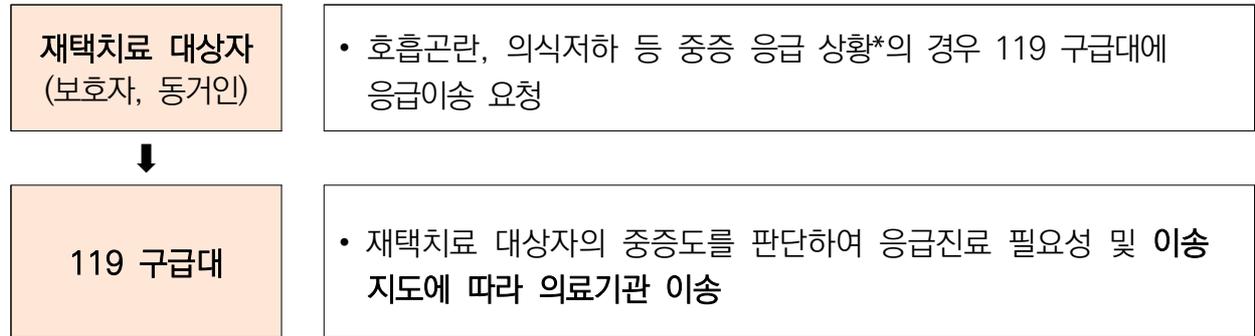
- 방역활동 실시

이동 또는 이송

-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이동 또는 이송*

* 지자체 이송수단 (구급차, 방역택시 등) 또는 개인차량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별 내용>



* 중증응급질환 주요 증상

- ▶ 쇼크(shock) 증상을 동반한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환자
- ▶ 의식 변화 환자(GCS < 8)
- ▶ 대기 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인 급성 호흡곤란 환자
- ▶ 경련 지속 중인 환자
- ▶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확인으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
- ▶ 증상 발현 이후 3시간 이내인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
- ▶ 중독 환자 중 치명적인 음독 물질과 양이 확인된 환자
- ▶ 그 외 구급지도의사와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협의하여 중증응급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5 관리기준 및 해제

◆ 재택치료자/동거인 관리기준

구분	관리방식 및 기간	해제 전 검사	격리 및 감시 해제 시점
재택치료자* (확진자)	확진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	없음	7일차 24:00 (= 8일차 00:00)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10일차 24:00 (=11일차 00:00)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수칙: PCR 검사(확진환자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 동안 가급적 외출 자제,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 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 (격리 준수 의무) 재택치료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 (주거지 이탈 인지 또는 사후 확인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 (수동감시) 동거인은 확진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 동안 수동감시이며, 권고 수칙 준수

□ 재택치료 대상자

- (격리해제기준) 확진일로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 격리
 - 단,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해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 가능
 - 확진일로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 격리이므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차 0시)부터 별도의 통지 없이 격리 해제
 - 격리해제 기준 미부합시 격리유지

〈임상경과기반 격리해제 기준〉

-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상세사항 <참고 4>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부적정) 격리해제 시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격리 가능

(☞ <참고 4>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마. 격리해제 부적정 및 재격리)

(각 시·도 담당)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중 재감염 사례로 추정되어 새로운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최근 격리해제 후 증상발현 등으로 다시 격리되는 등 격리해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격리되는 시점의 배정 결과를 입력하여야 함(환자관리정보시스템 내 [지역환자배정]에서 "재격리" 클릭)**

- ▶ 시도 환자배정에서 '재격리' 선택 → 재격리 시점의 분류결과 입력(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자택치료 등)
- * 기존의 이력에 '격리해제일'이 입력되어 있어야 함

□ 동거인

- (수동감시 관리방법)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를 실시하며, 지표환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차 밤 자정(24:00) 해제

* 격리대상 외 접촉자가 권고준수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 권고사항 및 권고수칙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

- (검사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60세이상 동거인은 2회 모두 PCR 검사 권고

- (생활수칙) ① PCR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②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④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⑤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6 생활관리

- (생활 수칙)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급적 **필수 공간(화장실, 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
 -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기간 중에는 **필수 외출 시****를 제외하고는 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 사용 후 소독하되,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

** 진료, 약 수령, 생필품 구매, PCR 검사 등

재택치료 보호자용 주요 생활수칙(예시)

☞ <참고 2> 재택치료 생활수칙 안내문 (예시)

- **(건강상태)**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
- **(감염예방)**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 씻기**
 -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와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음.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개인용품)**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 식기 등의 **개인용품은 확진자와 분리 사용**
- **(식사)** 확진 환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별도로 식사**
- **(수유 및 이유식)**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이 아닌 젖병·용기는 사용 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철저히 세척**
 - 확진 소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 엄마도 확진자인 경우 직접 수유 가능
 - 엄마는 확진자가 아닌 경우, 유축 수유를 권장하며 손위생 준수 필요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
- **(검사)** 동거인은 확진자가 격리해제 시 신속항원검사 권고(60세 이상은 PCR 권고)
 - 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
- **(세탁)**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며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 세탁하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재택치료 기간 중 착용한 의류는 재택치료 해제 후 반드시 세탁 후 착용
- **(청소 및 소독)**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 시행**
 - 소아가 자주 만지는 환경은 표면 소독 실시(소독용 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는 천으로 자주 닦기)
 - 격리치료 해제 시 재택치료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시행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재택치료 기간동안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외부 소독 및 이중밀봉 후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① 품목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 **(환기)** 정기적,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방문자 관리) 재택치료 대상자 및 동거인 이외의 방문자 출입 금지

- 격리생활 유지를 위해 방문자가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경우(생활 시설 고장 등)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철저
- 재택치료자 중 장애인 등 요양보호사나 치료사 등*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는 보호사(치료사)는 ‘예방접종완료자*’ 이어야 하고,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집안 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여야 하며, 최단 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또는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격리장소 외부인 방문 제한) 참조.

□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여, 재택치료자에게 배출 안내

- (보관) 재택치료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재택치료 종료 전까지 임의로 배출하지 않음
- (배출) 재택치료 종료 후
 - (일반쓰레기)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이중 밀봉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분리 배출
 - *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전파식별), 칩·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재활용품) 표면소독 후 품목별 분리 배출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

☞ <참고 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2022.2.9.)

□ (재난 대비)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택치료자(동거인 포함) 행동 요령 안내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아래 몸을 보호)에 따름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음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IV

재택치료 지원

1 재택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 참조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2.6.24.)에 따라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하고, △'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다만,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적용

2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관련 세부사항은「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및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참고

- (지원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 ☞ <참고 5>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을 따르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유급휴가비용), 읍·면·동(생활지원비)으로 연락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하되, 지원인원은 가구 내 격리자로 한정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PART. II

참고자료 및
부록(별첨)

참고 1

재택치료 근거 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2. 자가치료

가. 자가치료의 방법

- 1) 자가치료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장애인·영유아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 2)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 5)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치료 절차 등

-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2)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 3)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해제해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 (벌칙)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재택치료자용 생활안내문(예시)

①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격리해제기간 동안 자택에만 계세요.
 - 생필품 등은 **온라인으로 우선 구매**하세요.
 - 대면 진료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예약 후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도보나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 진료가 끝난 후 또는 처방약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 1)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2) 음성결과 확인 이후에도 **외출을 자제**하시고, 출근·등교 등과 같은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3)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검사, 증상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등)
 - 4)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평소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되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②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는 독방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 **KF94(또는 동급)마스크를 반드시 쓰세요**.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 식사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드세요.
-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으세요.
- 밥그릇 등 식기, 수건, 침대, 컴퓨터는 따로 쓰세요.
- 가족 모두 알코올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

③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불안해하지 않기 :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낮습니다.

- 가장 좋은 치료법 : 잘 쉬기, 물 많이 마시기, 아프면 진통제 먹기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샤워하기, 자주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 술 마시지 않기
- 마음은 가까이 :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기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다음 상황이라면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으세요.

- 본인이나 확진된 가족이 상태가 나빠지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환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
-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잘 살펴보고, 기다려도 아래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 ☑ 발열, 오한, 기침, 목이 따가움, 코막힘, 콧물, 근육통, 두통, 피곤함
- ☑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맡지 못함
- ☑ 메스껍고 토함, 설사

-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등으로 연락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으세요.**
- **아래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 ☑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함
- ☑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할 때
- ☑ 깨워 놓아도 자꾸 자려고 할 때
-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

☞ **비상상황으로 119에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히세요.**

5]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의 폐기물은 재택치료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재택치료 종료 전까지 임의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
- 재택치료 종료 후, 다음과 같이 배출해 주세요.
 - (일반쓰레기)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이중 밀봉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분리 배출
 - *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전파식별), 칩·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재활용품) 표면소독 후 품목별 분리 배출

6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소아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안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분간 집안이나 방 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것에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들

-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하고,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난 후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보보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가족들,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야 해요.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로요.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 여러분이 쓰는 그릇, 수건, 휴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 합니다.
옷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번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
-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해요. 밥 먹기 전,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

-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재고, 아픈 곳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기침, 콧물,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
-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요. 숨 쉬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예전에 알던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영·유아 및 소아 재택치료자를 돌보는 보호자 안내문(안)

<중앙방역대책본부·대한소아감염학회>

영·유아/소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

-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1인)를 지정하고, 그 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동거인은 최대한 재택치료 중인 아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를 원할 경우 영유아아동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재택치료자를 돌볼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재택치료 중인 아이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따라 손씻기를 시행합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씻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접촉 전·후, 아이 주변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접촉한 후,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즉시 손씻기
-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여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재택치료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 **확진된 영유아 및 소아의 목욕**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시켜야 합니다.
 -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70% 에탄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1,0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 **재택치료 중인 아이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격리된 아이에 대한 마음건강지침**
 - 격리 중인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격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섭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기분이나 걱정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 격리 조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정확하면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나 친구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심한 불안, 짜증, 행동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정신건강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유 및 이유식관리]

◦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 엄마도 코로나19 확진환자라면 직접 수유가 가능합니다.
- 수유하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나, 직접 수유를 해야 한다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마스크(KF94 등급 또는 그 이상), 장갑을 권장합니다.
- 수유를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 분유수유 및 이유식

- 분유는 젖병에 들어 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합니다.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고 나머지는 폐기합니다.
- 식기류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회용이 아닌 식기류를 사용할 경우,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소독 및 환경관리]▶

◦ 재택치료 중인 아이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아이가 사용 후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세요.

◦ 기저귀 또는 토사물의 관리

-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토사물을 치울 때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합니다.
- 아이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일반쓰레기는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소독 후 분리 보관합니다.
- 재택치료 종료 후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소독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하여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배변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쓰지 말고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 장난감 관리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어 아이의 격리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난감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합니다.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깨끗이 세척 해야 합니다.

◦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

◦ **폐기물 관리**

- 재택치료자의 폐기물은 재택치료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재택치료 종료 전까지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재택치료 종료 후, 다음과 같이 배출해 주세요.
 - ① (일반쓰레기)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이중 밀봉하여 배출
 - ②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분리 배출
 - *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전파식별), 칩·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③ (재활용품) 표면소독 후 품목별 분리 배출

■ 격리기간 동안 귀하의 아이에 대해 아래의 방법으로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시 진료 또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하단의 QR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집에 있는 체온계로 발열 체크 및 감기 증상이 발현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홈페이지) 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조**

(소독제 희석액 준비, 개인보호구 착용, 손소독 방법, 환자이용공간 소독방법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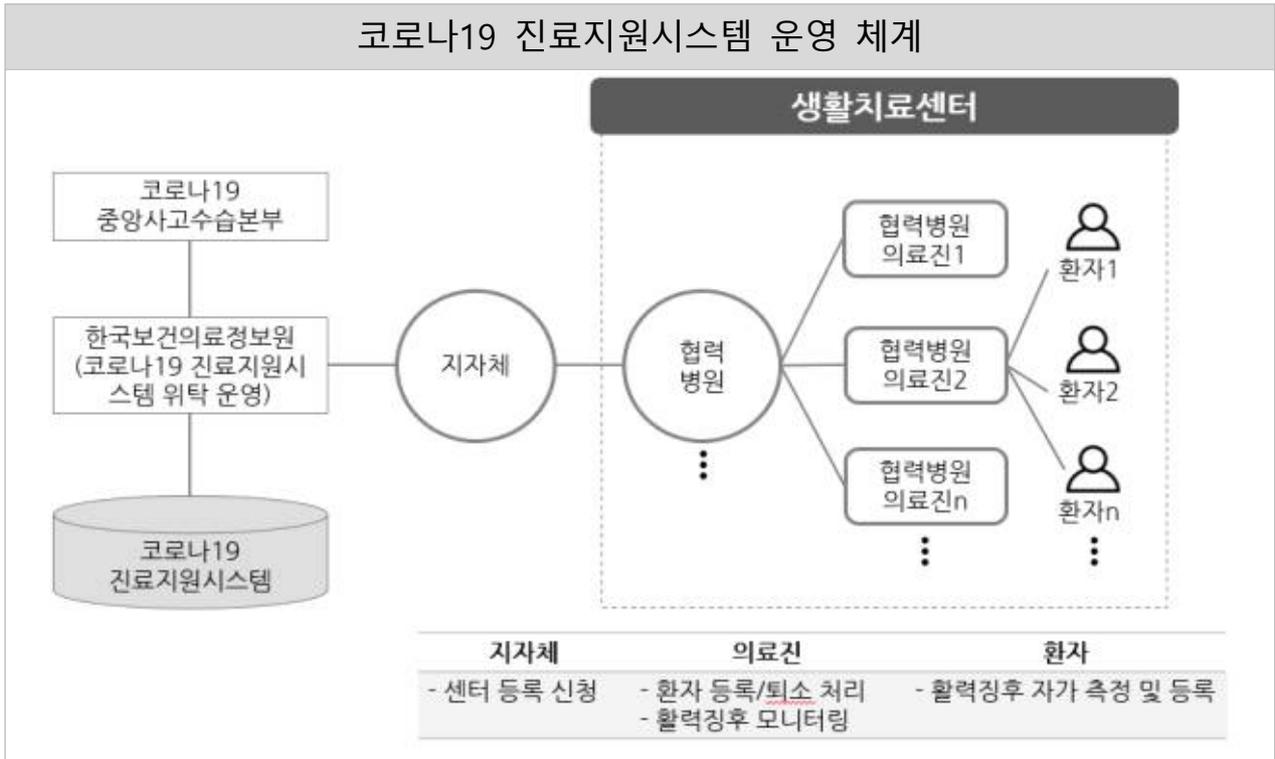


참고 3-1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운영 절차 안내

- ◆ 향후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록 및 운영 절차 안내

□ 시스템 운영 체계



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담당

- ‘생활치료센터 담당자’ 를 지정하고,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팀’ 과 협의
- 시스템 사용이 결정되면, ‘시스템 등록 신청서’ 를 취합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공문 전달

*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위탁운영 기관(이하 ‘정보원’)

※ 붙임2) 별첨.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_부록 3 [의료기관 등 관련 서식] 중 서식 [나5-1]제출

- 관할 협력병원 의료진이 시스템(의료진용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 신청서’ (서식 나5-3)를 작성·취합하고, 의료진ID를 시스템에 등록

※ 의료진 사용자 등록시 지자체는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함께 징구 및 보관

② (협력병원) 의료진

- (환자 입소) 입소한 환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환자에게 스마트폰 앱 접속 방법 및 사용법 전달*

* [참고3-3]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안내 인쇄물을 준비하여, 입소KIT에 동봉 후 앱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

- (환자 건강모니터링) 환자용 앱 또는 의료진 직접 입력한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며, 의료진 메모에 환자 처치 내용 등 입력
- (환자 퇴소) 생활치료센터 퇴소 환자는 시스템에서 환자상태 '퇴소' 처리

③ (입소자) 환자

- (활력징후 입력)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활력징후 측정 후 환자용 앱에 측정된 데이터 등록

□ 시스템 사용 신청 절차

- 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담당자가 시스템 등록 신청*(한국보건 의료정보원)

* 시스템 등록 신청서(서식 나5-1) 문서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 ② 생활치료센터 시스템 등록 및 관리자 계정 안내(정보원 → 생활치료센터 담당자)

- ③ 시스템 운영 교육(정보원)

* 정보원과 사전 일정 협의 후 비대면 교육 시행

- ④ 사용자 등록(서식 나5-3) 및 시스템 운영*(생활치료센터 담당)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기본문진,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진료 등

□ 시스템 운영 절차

- ① (신규 입소 환자 등록) 당일 입소한 신규 환자 등록*

* 의료진 시스템 > 환자관리 > 환자정보 등록

- ②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 의료진은 환자에게 앱 설치* 안내^[참고3-3]

* 환자용 앱 설치 및 사용법 안내 페이지 : <https://hms.mohw.go.kr/mobile/helper>

③ (건강정보 자가진단) 환자는 **활력징후*** 자가측정 → 측정결과와 **임상증상****을 모바일 앱에 입력

*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손실, 미각손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구토, 설사,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기타

④ (환자상태 모니터링) 의료진은 환자가 입력한 **활력징후**와 **임상증상**을 ‘**환자현황판**’*을 통해 확인

* 의료진 시스템(관리자) > 진료관리 > 환자현황판(대시보드)

- 활력징후 입력값에 이상이 있으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후 환자에게 재측정 요청**

**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 직접 입력도 가능

⑤ (환자 퇴소) 의료진은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상태 정보 수정***

* 의료진 시스템 > 환자관리 > 환자정보 > 환자이름 선택 > 수정 > 상태값을 “퇴소”로 변경

□ 환자등록 시 참고사항

○ 환자용앱 로그인 체계

-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환자용앱 로그인 체계는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생년월일 8자리(초기 비밀번호)) 정보를 활용

※ 환자정보 등록 시, 환자의 이름 항목에 특수문자 사용 불가

- 사용법 안내 웹페이지 : <https://hcs.mohw.go.kr/mobile/helper>

- 앱 설치 및 로그인 방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여부를 환자 등록 시 선택 가능

※ 앱 다운로드 주소 및 로그인 방법 환자에게 발송

□ 문의사항 안내

○ 콜센터 : 1661-8308 (9:00~18:00, 연중무휴)

※진료지원시스템 앱, 웹 사용법 문의에 한함

□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 (구축목적)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지원
- (접속주소) <https://hcs.mohw.go.kr>(관리자, 의료진)

□ 주요 기능

- 환자는 활력징후(vital sign)를 자가 측정하여 모바일 앱에 측정결과 입력 → 의료인은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화상통신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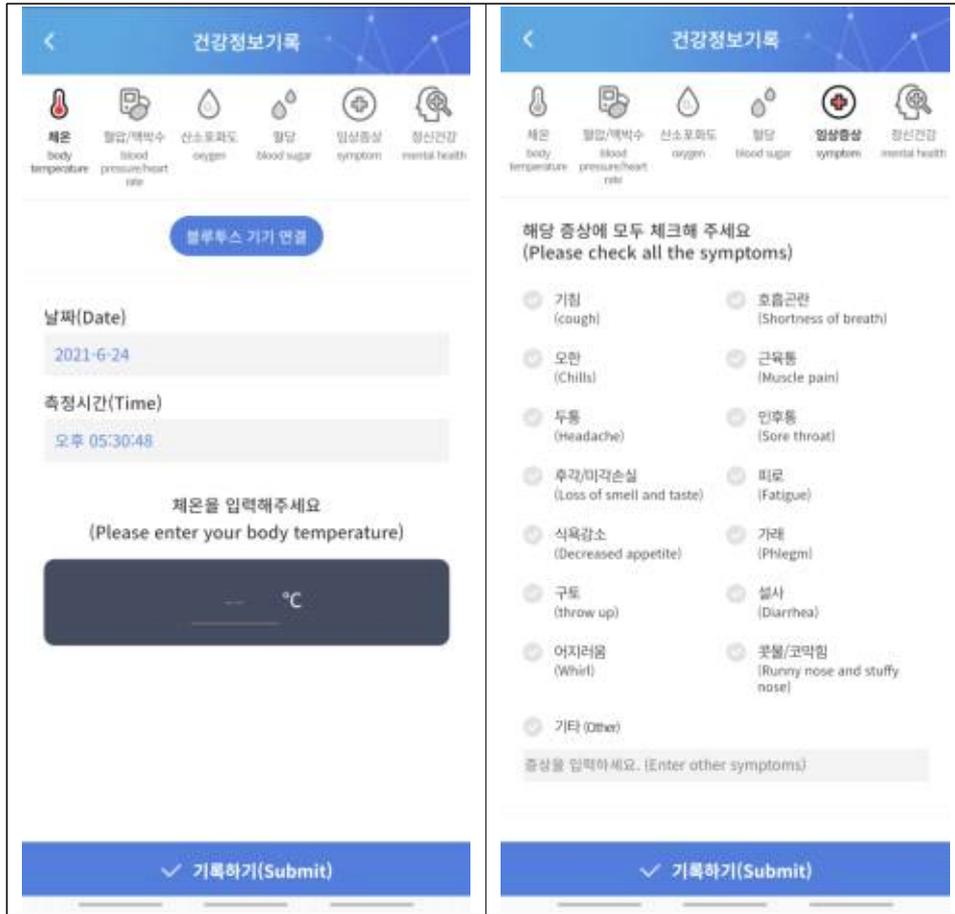
- (환자용 모바일 앱) 입소자 기본문진, 활력징후* 자가 측정결과 입력(또는 블루투스 연동), 임상증상 기록, 정신건강 자가진단, 응급전화 기능 등

*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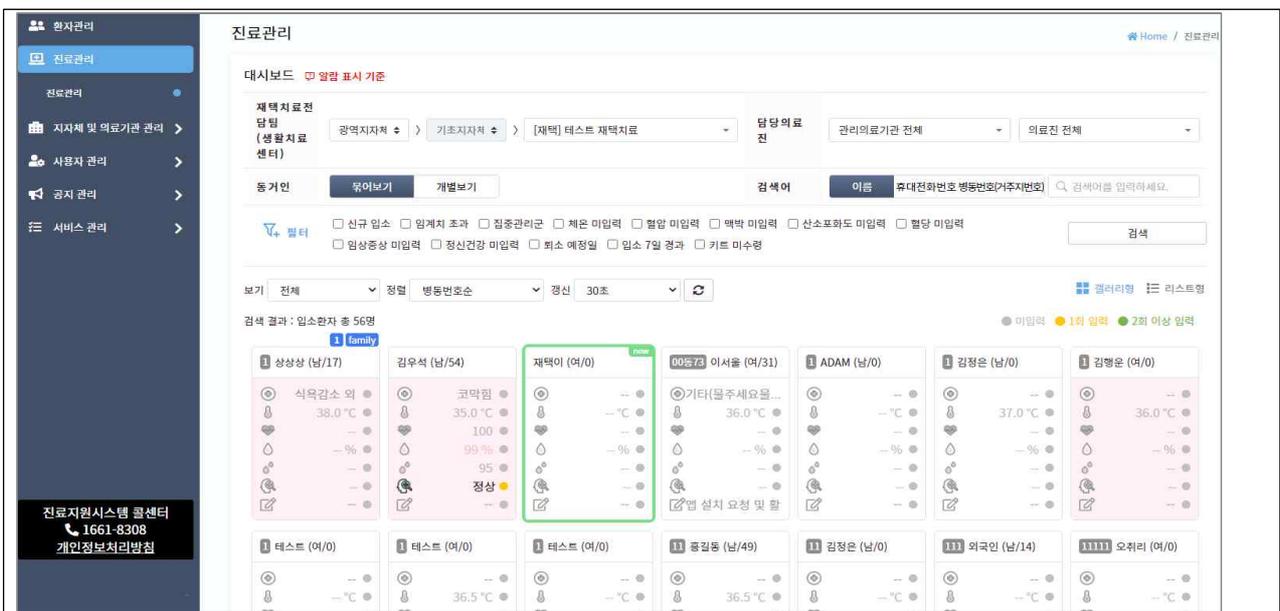
- (의료진용 시스템)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자현황판 및 이상징후 알람, 푸시서비스 및 화상통신 기능 등

* 그 밖에 의료비용(요양급여) 청구 목적 협력병원 EMR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

□ 건강상태 자가진단 (환자용 모바일 앱)



□ 환자 건강정보 모니터링 (의료진용 웹)



참고 3-3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안내

□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 방법

○ 설치 방법

* 안드로이드폰 :  선택 후 “진료지원시스템” 검색 후  앱 설치

* 아이폰 :  선택 후 “진료지원시스템” 검색 후  앱 설치

※ 설치 안내 웹 페이지 : <https://hcs.mohw.go.kr/mobile/helper>



○ 로그인 방법

휴대전화번호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숫자만)
성명	주민등록상 성명 입력
비밀번호	최초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8자리 (예 : 19990101 입력)

○ 사용 문의 : 1661-8308 (운영 시간 : 평일 및 주말·휴일 09시~18시)

※ 상담원이 통화 중인 경우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순차 회신 드립니다.

□ 환자용 모바일 앱 주요 기능 사용법

로그인 화면	첫 화면	건강정보기록(활력징후)	건강정보기록(임상증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선택 (외국인은 해당 언어 선택)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선택 휴대전화번호, 성명, 비밀번호를 입력(외국인일 경우에는 성명 제외) 모든정보 입력 후 로그인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온, 심박수, 혈압 등 건강정보를 기록 본인문진정보 입력(선택·회인력) 입력한 건강정보기록 및 문진정보 조회 온라인화상으로 의료진과 1:1비대면진료 모바일앱 및 코로나 관련 이용안내 메시지 수신 내용 조회 메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측정한 건강정보 (체온, 혈압, 산소포화도 등) 입력 기록하기 선택하면 입력한 정보가 기록으로 저장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모두 체크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됨) 기록하기 선택하면 입력한 정보가 기록으로 저장됨

참고 4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참조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합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참고문헌) van Kampen, J.J.A., van de Vijver, D.A.M.C., Fraaij, P.L.A. et al. Duration and key determinants of infectious virus shedding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Nat Commun 12, 267 (2021)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8. 24:00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0 24:00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검사기반 기준 적용 가능

※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

■ 격리해제 부적정 및 재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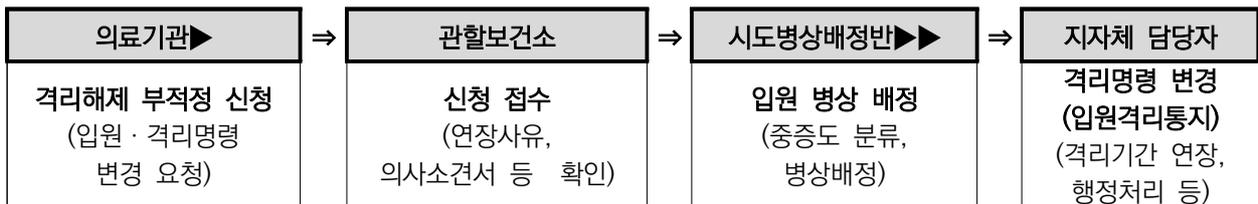
- (격리해제 부적정) 격리해제 시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격리) 격리해제 부적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아래 기준에 따라 재격리 조치

- ▶ (재격리 신청가능기간)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 ▶ (증빙자료) (필수) 의사소견서, (선택) 영상검사(X-ray 또는 CT) 자료 등
 - * 의사소견서에는 폐렴 등과 같이 코로나19 자체의 증상 악화 및 발현을 시사하여야 함.
 - 코로나19 증상 악화가 아닌 확진자의 기저질환 악화에 대해서는 불인정
- ▶ (재격리 연장가능기간) 재격리 시작일(의사진단일 또는 입원일)로부터 5일 이내
 - * 단, 필요 시 추가연장 가능하나,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만 가능

※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재격리 및 연장기간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

- (격리해제 부적정 및 재격리 처리절차) 기본적으로 기존의 의료기관↔관할 보건소 간 격리명령 변경 절차*를 이용해 처리

*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입소, 병원 입원 간 전환 시



- ▶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의료기관'(응급실, 전담병원, 외래진료센터)에 적용
- ▶▶ 응급실 경유한 자체수용의 경우는 선배정 후보고 가능

※ 기본 절차로 준용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 적용 가능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판)’/‘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중앙방역대책본부 ‘22.7.11.)

①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통장사본 등

②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신청서류) ① 생활비지원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⑤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 다만, 제1호 단서규정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자가격리 포함)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자가격리(재택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 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하고, 격리 종료 후에 배출해주세요!

일반 쓰레기



Step.1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보관



Step.2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한 번 더 밀폐(이중 밀봉)한 뒤
상부·외부 소독 후 배출

음식물 쓰레기



Step.1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 용기)에
담은 뒤 소독해 보관



Step.2

봉투(또는 전용 용기) 외부를
다시 한 번 소독 후 배출

재활용품



Ste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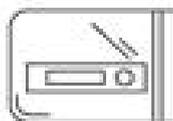
표면을 소독해 보관



Step.2

다시 한 번 소독해
품목별로 분리 배출

자가진단키트 (가정 내 사용)



Step1

진단키트에 동봉된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

Step2-1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시 선별진료소 등에 제출

Step2-2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

부 록

1 **코로나19 PCR 검사자 대면진료 안내문예시** ※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 ①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시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찰과 (필요한 경우) 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진료 안내를 위해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기 바라며,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지역의 원스톱 진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진료시간	24시간 진료
○○○병원	○○시 ○○구 ○○로 ○○길 ○○건물 1층	000-0000 -0000	월 09:00~18:00 화 09:00~18:00 수 09:00~18:00 목 09:00~18:00 금 09:00~18:00 토 09:00~18:00 일 09:00~18:00	가능
○○의원				

※ 의료기관은 계속 추가 중이며,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 생활안전지도 앱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 ② 검사 결과 확인 전 또는 결과가 음성이어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진료 당일 처방이 가능합니다.
- 팩스로비드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①만 60세 이상 또는 ②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이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

- 라게브리오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①만 60세 이상 또는 ②만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이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

- ④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지역의 의료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병원	○○시 ○○구 ○○로 ○○길 ○○건물 1층	000-0000-0000
○○의원		

⑤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

1. 검사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2.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하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건소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통지 이외의 상황에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1. 귀하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확진되었던 경우 제외).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자기입식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3700125/159792275> (※제출 후 수정불가)

- 격리대상자:000
- 격리기간:2022-06-20~2022-06-26 24:00
- 격리장소:자가(입원환자는 병원, 시설입소환자는 생활치료센터)

2. 통지기관 : 00시 000보건소 보건소장(담당자 000-000-0000)

- * 격리조치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격리조치에 대한 이의 시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성이라도 10일간 가급적 외출 자제

-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5.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검색)

6. 정부24(홈페이지 및 앱)에서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격리해제후 90일 이내 신청)

-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안내 <https://url.kr/soejz>

3**재택치료자 안내문자 (예시)**□ **안녕하십니까**

홍길동님께서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입니다.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법정 본인부담금 발생)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24시간)** < 0000병원(상담센터명) : xxx-xxxx-xxxx >
*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① **대면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 미리 센터에 예약(본인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야 야간 등 24시간 비대면 의료상담·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③ **의료적 상담 이외에 격리 시 준수사항, 생활지원금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xxx-xxxx-xxxx >
- ④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클릭)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택치료자 안내문자(소아용) (예시)

□ 안녕하세요

홍길동님께서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입니다.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법정 본인부담금 발생)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24시간) < 0000병원(상담센터명) : xxx-xxxx-xxxx >
*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① 대면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 미리 센터에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는 야간 등 24시간 비대면 의료상담·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소아·청소년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평상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③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④ 의료적 상담 이외에 격리 시 준수사항, 생활지원금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xxx-xxxx-xxxx >
- ⑤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클릭),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택치료자 안내문자(임산부용)(예시)

□ 안녕하세요

홍길동님께서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입니다.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법정 본인부담금 발생)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24시간) < 0000병원(상담센터명) : xxx-xxxx-xxxx >
*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① 대면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 미리 센터에 예약(본인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야 야간 등 24시간 비대면 의료상담·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임산부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평상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③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④ 의료적 상담 이외에 격리 시 준수사항, 생활지원금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xxx-xxxx-xxxx >
- ⑤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클릭)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22.8.1. 기준)

* 최신 및 추가 자료는 '질병관리청>알림·자료>지침'(https://c11.kr/wpv5)에서 확인



질병관리청

경신일: 2022.8.1.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하세요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1



확진자 공통안내문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와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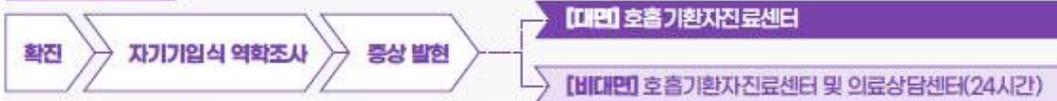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 증상이 있을 때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는 ①주사제(베클루리주)와 ②먹는치료제(막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있음
- ▶ **코로나19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먹는치료제) 의과에 해당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처방 가능
-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재택치료 개요



! 격리안내

검체채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 * 본인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 ①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②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 ④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⑤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귀가**

-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 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동거인 공통안내문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시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하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운영)**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재택치료 안내문

*지점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1 건강관리

-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1 대면진료 및 전화 상담·처방 안내

-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 주세요.

- ▶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은 경우**, 처방의약품은 가족 등 동거인(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 **아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문자 참조

-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비대면 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1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 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 **3일 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유통상시 검사이행 의료기관 방문 등)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 관리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입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든든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에 문의하세요.